신단체취급특약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

신단체취급특약

1. 보험종목의 명칭 : 신단체취급특약

2. 적용대상 계약 : 개인보험 계약

3. 대상단체 및 피보험단체

가. 대상단체

(1) **제1종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종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동업자단체(변호사회, 의사회 등)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회원단체** : 제1종단체 및 제2종단체를 제외하고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고 그 회원명부에 등재 또는 서면에 의한 가입 의사 표시에 의해 구성된 단체(동호회, 동문회, 카드사 회원, 온라인 사업체 회원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20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다만,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다수구매자집단** : 상품판매자가 자신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집단(500인 이상)

나. 피보험단체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한다.

4. 보험계약자에 관한 사항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하되 다수구매자집단의 경우 상품판매자로 한다.

5.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단체와 회사의 협약에 따라 단체의 소속원 또는 회원자격을 가진 자가 신용카드납입가입 또는 자동이체납입가입으로 하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납입한 것으로 본다.

나. 보험계약자는 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시 가입자의 탈퇴 또는 추가가입에 따른 보험료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신단체취급특약이 적용된 주계약(부가된 특약 포함)은 다음과 같이 피보험자수에 따라 예정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구 분		할인범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시	피보험자수	500명미만	500명이상	1000명이상	2000명이상
	보험료할인율	5%이내	10%이내	15%이내	20%이내
상기 이외의 일괄납입계약시	피보험자수	500명미만	500명이상	1000명이상	2000명이상
	보험료할인율	3%이내	7%이내	10%이내	15%이내

7. 피보험자 동의에 관한 사항

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보험자가 가입신청서(첨부 1) 등에 자필로 서명날인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명부(첨부 3)를 작성(종이 인쇄, 전자매체 수록 등)하고 서명 날인.

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칙등 규약)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단일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책임개시일 등 주요내용을 가입사실확인서에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